

##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.

### 1. 징계대상

- 가. 성 명: 우 현 재
- 나. 생 년 월 일: 1978.05.01..
- 다. 소 속: -

### 2. 징계내용

- 가. 징 계 종 류: 업무정지 1월
- 나. 효력발생일: 2024.06.10. ~ 2024.07.09.
- 다. 사 유: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 선정,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을 부적정하게 실시하고,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을 위반

2024년 5월 29일

국토교통부장관